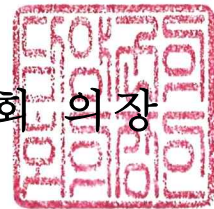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2. 11. 18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“2022년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”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23년~2026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
(안 제4조2항, 별표1)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2023년도	• 월 1,819,000원	
2024년도	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5년도	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6년도	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2. 11. 18.~11. 23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–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–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

1. 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
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의견

관련조문

의견

3. 기 타
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 소

(전화 :

성명

)

(서명 또는 인)

담양군의회 의장 귀하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금 액	비 고
2023년도	• 월 1,819,000원	
2024년도	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5년도	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2026년도	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 <개정 2021.2.19.> 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금 액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2019년도</td><td>• 월 1,700,000원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0년도</td><td>• 2019년도의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1년도</td><td>• 2020년도의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2년도</td><td>• 2021년도의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분	금 액	비 고	2019년도	• 월 1,700,000원		2020년도	• 2019년도의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2021년도	• 2020년도의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2022년도	• 2021년도의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[별표 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4조 관련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금 액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>2023년도</td><td>• 월 1,819,000원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4년도</td><td>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5년도</td><td>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tr><td>2026년도</td><td>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</td><td></td></tr></table>	구분	금 액	비 고	2023년도	• 월 1,819,000원		2024년도	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2025년도	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2026년도	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
구분	금 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9년도	• 월 1,7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0년도	• 2019년도의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1년도	• 2020년도의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2년도	• 2021년도의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금 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3년도	• 월 1,819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4년도	• 2023년도의 월정수당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5년도	• 2024년도의 월정수당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6년도	• 2025년도의 월정수당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